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3월 0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2009.6.19.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나, 2015.2.6. 일부개정된 이래 이용료 등을 변경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관련법 용어에 맞게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함.
-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야영장별 시설의 종류를 실지에 맞게 정리하고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및 별표)

-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이용 제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환급 등의 적용에 대해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조례안은

제명을 관련법 용어에 맞도록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방림면에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제명을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평창국민여가캠핑장”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입장료’ 등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음.

○ 검토결과,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별표] 중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야영테크(5m×14m)의 성수기, 주말, 주중 가격을 “50,000원”, “40,000원”, “30,000원”을 각각 “70,000원”, “60,000원”, “50,000원”으로 수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
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
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제3조(이용료) 야영장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의 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마.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바.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가. 14일 : 이용료의 100분의 30
- 나. 15일부터 30일까지 : 이용료의 100분의 40
- 다. 31일 이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 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영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야영장 이용료(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14m	1회/1일	70,000원	60,000원	50,000원
	야영테크	5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야영테크	4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야영테크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3m×6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고정식	황토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황토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유형	시설		이용료 징구기준	주간+ 야간	야간	주간
편의시설	다목적무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7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야영테크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야영테크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카라반형	카라반		1대/1일	120,000원	120,000원	110,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25,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20,000원	8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00,000원	70,000원
유형	시설		대상		이용료 징구기준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비고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3.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13세 이하는 제외) 5,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